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의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 필요’에 따른 법령 일괄 정비 추진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따라서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전쟁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을 금지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전쟁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전쟁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물자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687